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46204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redacted]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6. 선고 2016구합74095 판결
변 론 종 결	2017. 7. 6.
판 결 선 고	2017. 8.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5,934,420원 및 농어촌특별세 5,593,4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터 제4쪽 제9행까지 및 제9쪽 제11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6항 제8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간주취득세의 부과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의 입법취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이미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설립 내지는 전환되었더라도 국내 회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를 자회사로 새로이 편입하여 그 국내 회사에 대한 지주회사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에 따른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지주회사가 사업내용을 지배할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새로이 편입하기 위하여 해당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함으로써 지주회사 및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같은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의 문언과 아울러 지주회사에 대한 세재혜택의 취지 및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미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 내지는 전환된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함으로써 그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새로 편입하여 그 국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9713 판결 참조).

2) 위 대법원 판결에 적용된 법률과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용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법리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6두59713 판결 적용 법률	이 사건 적용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5조	■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⑥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3)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3. 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된 상태에서 2014. 6. 27.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98.89%를 취득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한 자회사로 편입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을 자회사로 새로 편입하였더라도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5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문용선

판사 김복형

판사 남양우